울산광역시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조례안

의 안 2276 번 호

제출연월일: 2024. 5. 30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정이유

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에 따라 지정된 "울산 중구 태 화역사문화 특구"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조례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다. 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)
 - 운영계획 및 성과평가, 특화사업의 범위, 규제특례사항 등
- 라. 특구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)
 - 위원회 설치 및 기능, 구성, 임기, 위원장의 직무, 존속기한, 회의의 운영, 간사 등
- 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- 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 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18조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사항: 해당사항 없음
- 나. 규제사무심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(가족복지과-12847호, 2024. 3. 26.)
- 라. 입법예고: 2024. 3. 18. ~ 4. 8.(21일간) / 의견 없음
- 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1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인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태화역사문화특구"(이하 "특구"라 한다)란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1조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서 지정·고시된 지역을 말한다.
 - 2. "특화사업자"란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울산광역 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.
 - 3. "규제특례"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운영계획 및 성과평가) 구청장은 특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특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특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.
- 제4조(특화사업의 범위)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전통역사문화 계승사업
 - 2. 지역 문화·한글 활성화사업
 - 3. 콘텐츠 활용 관광사업
 - 4. 그 밖에 구청장이 특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

- 제5조(재정지원)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6조(규제특례 사항) ① 구청장은 「도로교통법」 제6조에도 불구하 고,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특구지역 내의 도로에 차마의 도로 통행 제한 또는 금지 등의 조치를 해 줄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「도로법」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법 제45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특구지역의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.
 - ③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건축법」 제20조제1항에 해당하 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법 제57조에 따라 신고대상 으로 본다.
- 제7조(특구운영위원회 설치) 구청장은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속 적인 발전에 필요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"특구운영위원회"(이하 "위 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제8조(기능) 위원회는 효율적인 특구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 을 수행한다.
 - 1. 특구계획 및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심의
 - 2. 특화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자문
 - 3. 특구의 홍보 및 특구발전 방향 제시
 - 4. 그 밖의 특화사업 관련 자문이 필요한 사항
- 제9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(互選)한다.
 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

- 2. 역사·문화·경제·한글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
- 3.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4. 특구업무 담당 국장
- 5. 특화사업 관련 부서장
- 6. 그 밖에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- 제10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 -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2조(위원회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제13조(회의의 운영)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 -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2.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4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특구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근거법규

□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

- 제18조(조례의 제정)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·개정·폐지할 수 있다.
 -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정·개정·폐지하는 조례는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및 제14조에 따라 승인된 특화특구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.
 -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·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4호
 -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○ 「울산광역시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조례안」은 조례 제정 내용이 선언적 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3. 작성자

○ 소 속: 문화관광과

○ 직 급: 지방행정주사

○ 성 명: 박선희

○ 연락처: (052)290-3641